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68]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71]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br>번호 | 1668, 1671 |
|----------|------------|

2020년 12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 1.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7월 13일 서윤기 의원 외 42명

나. 회부일자 : 2020년 7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298회 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12월 1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7월 13일 서윤기 의원 외 42명

나. 회부일자 : 2020년 7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298회 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12월 1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Ⅱ. 제안설명의 요지 (서윤기 의원)

### 1.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 2.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 Ⅲ. 주요내용

### 1.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함(안 제9조제2항).

### 2.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함(안 제9조제2항).

## IV. 참고사항

### 1.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 2.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 V.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개정안의 취지

- 동 조례 개정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1668,1671) 은 2019년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권고 결과를 반영해 조례의 표현 가운데 서울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의안번호 1668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개선이 권고된 사항으로 제9조제2항 ‘자매결연’이라는 용어를 ‘상호결연’으로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9조(구매 협조요청) ① (생략)  | 제9조(구매 협조요청) ① (현행과 같음)  |
|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간의 <u>자매결연</u> 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br>----- <u>상호결연</u> -----<br>-----<br>-----<br>-----. |

- 의안번호 1671 「서울특별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개선이 권고된 사항으로 제9조제2항 ‘자매결연’이라는 용어를 ‘상호결연’으로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 신·구조문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
|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 (생략)   |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       | (현행과 같음)   |
| ②                    |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 | -----      |
|                      |  |                      |       | -상호결연----- |
|                      |  |                      |       | -----      |
|                      |  |                      |       | -----.     |

#### 나.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제1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3~2017)’과 2017년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등 2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인권을 시정의 기본이념으로 받아들여 인권도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인권기본 조례’는 서울시의 인권상황과 주요 인권의제가 변화됨에 따라 개정을 거듭해 왔음. 그 가운데 인권영향평가 제도는 서울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16년도 6차 개정사항에 포함된 내용이며, 2019년부터는 인권영향팀을 신설하며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온 바 있음.

## 「서울시 인권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도시“라 함은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인권부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서울시에서는 2018년 실시한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후’인권영향평가 점검표를 개발하고, 2019년 서울시의 자치법규 860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영역별로 서울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 전수조사를 위한 점검표는 ‘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시민참여보장’ 등 3개 분야 9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
|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 1) 차별적 용어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
|                    | 2)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        |
|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br>구제 | 3)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          |
|                    | 4)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                       |
|                    | 5) 반환권 제약 (공공시설 이용 시 반환조항 미비)        |
|                    | 6) 구제권 제약 (과태료 부과징수 법적 근거, 구제절차)     |
| 시민참여 보장            | 7) 개인정보보호권 보장                        |
|                    | 8)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여부       |
|                    | 9)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 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 |

#### 다. 세부 조례내용 검토 : ‘자매결연’과 ‘상호결연’

-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권고내용’ 중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에 해당하는 사항임. 본 평가분야는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사항을 평가하고 있음.
- 인권담당관에서는 ‘자매결연’이라는 표현이 우열적 관계를 지칭하는 차별적 용어이기에 상호결연이라는 객관적 용어로 순화할 것이 권고되었음.
- 해당 용어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에서 규정한 차별적 용어임.

-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자매도시(Sister City)라는 용어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변경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우열적 관계를 반영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상호결연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됨.
- 다만, 인권담당관에서는 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도시의 경우는 상호결연 도시 (Sister City)로 병기 가능토록 하되 장기적으로는 Sister City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음.
- 현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등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하나, 자매결연 자체에 대한 용어 정의는 없는 상태임.

#### 라. 조례 개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 : 원안동의

-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에 따른 단순 용어 변경으로 쟁점사항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3

### 종합의견

- 개정안 2건 모두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에 따른 단순 용어 변경으로 쟁점사항은 없음. 개정안은 성차별적이고 우월적 관계를 나타내는 “자매결연”을 객관적인 용어인 “상호결연”으로 순화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여겨짐.

- 또한, 개정안 1668건의 경우,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위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도 “자매결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될 여지는 없음.
- 조례와 같이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 가운데에서도 차별성과 권위적인 성격을 가지는 용어, 일반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차별용어 또는 권위적 용어로 분류할 수 있는 용어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이것은 법령이라는 영역상의 특징일 수 있지만, 용어의 어원과 의미에 관한 이해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할 것임.<sup>1)</sup>
- 조례와 같은 법령은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만큼,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과 시대에 적합해야 함.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법령용어는 국민들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또한 법령에 사용되는 언어는 널리 사용되는 언어일지라도 권위적·비민주적이거나 성차별적인 측면이 있다면 적절한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동 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1) 강현철 외(2015),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VI.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II. 토론요지 : 「없음」

VI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IX. 소수의견 요지 : 「없음」

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br>번호 | 1671 |
|----------|------|

발의년월일 : 2020년 7월 13일

발 의 자 : 서윤기, 김동식, 박기재, 정진철,  
김기대, 김제리, 봉양순, 임만균,  
정재용, 임종국, 양민규, 이정인,  
유정희, 박기열, 오현정, 전병주,  
이상훈, 김화숙, 황인구, 장상기,  
오중석, 최 선, 채인묵, 장인홍,  
이태성, 추승우, 이동현, 전석기,  
노식래, 노승재, 김경영, 김희걸,  
권순선, 문병훈, 김수규, 김광수,  
유 용, 송도호, 최영주, 문장길,  
최정순, 홍성룡, 김경우 의원(43명)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함(안 제9조제2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p> <p>① (생   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br/>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br/>간의 <u>자매결연</u>을 알선하는 등<br/>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br/>여 노력하여야 한다.</p> | <p>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br/>-----<br/>----<u>상호결연</u>-----<br/>-----<br/>-----.</p> |